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산 립 복 지 진 흥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6712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에 따른 법률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산림복지업”의 등록에 필요한 전문인력 요건을 형평성에 맞게 일부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 나. 산림복지전문업 중 종합산림복지업의 전문인력 등록요건 일부 완화(안 제25조제1항 별표 5)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부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예정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산림복지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8조제3항”을 각각 “법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중 “법 제8조제5항”을 각각 “법 제8조제6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별표 5 제5호 전문인력란 중 “산림치유지도사 5명”을 “산림치유지도사 3명”으로, “2명 이상”을 “1명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복지전문업 등록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산림복지전문업에 등록하거나 등록신청 중인 자에게도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 촉 등) ① 산림청장은 <u>법 제8 조제3항제1호</u> 또는 제8호에 따 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 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 囑)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 촉 등) ① ----- <u>법 제8 조제4항</u>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u>법 제8조제3항제2호</u> , 제4호 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9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거나 지명 한 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해당 위원에 대한 추천이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② <u>법 제8조제4항</u> ----- ----- ----- ----- ----- -----.
제12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심 의사항) ① <u>법 제8조제5항</u> 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 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는 제1분과위원회와 제2분과위 원회로 나누어 설치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심 의사항) ① <u>법 제8조제6항</u> ---- ----- -----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전문위원) ① <u>법 제8조제5</u>	제15조(전문위원) ① <u>법 제8조제6</u>

<u>항</u>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 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산림 청장이 임명한다. 1. ~ 3. (생략) ② ~ ③ (생략)	<u>항</u>-----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1839